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6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소관사항과 고유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공무원(제7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제9조)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운용 부서를 이전

나. 기타 조문의 문구와 어휘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벤처투자 촉진의 관한 법률 제7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8. 24.~9. 1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고성한(☎2133-523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을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안건”을 “안건 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③ (생략)</p> <p>④ <u>서울특별시</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분임기금운용관</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투자계정 : <u>경제정책과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생략)</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서울특별시</u>-----</p> <p>-----</p> <p>-----</p> <p>-----</p> <p>-----</p> <p>-----.</p> <p>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u>창업정책과장</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현행과 같음)</p>

3. (생략)

②·③ (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 ①·② (생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3·4. (생략)

③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① ~ ④ (생략)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창업정책과장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안
건 심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부서 간에 기존 기금의 관리 소관을 단순 이전하는 사안이기에 부수 비용이 미발생

4. 작성자

경제정책과 행정6급 고성한(02-2133-5234)